

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선의 건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11. 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9. 10. 22
- 다. 상정일자 : '99. 10. 22 (제80회 임시회 제2차 산업·건설위원회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최성기
- 나. 제안이유

-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3. 1. 17 (건설부 고시 제17호) 1읍 2개면 16개리 41.7km²가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- '98. 12. 24 헌법 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'99. 7. 23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,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구역
 -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
- ※ 해제범위 : 거주용 건축물 (주택 및 부속사) 건축면적 합계의 5배이내

위 치	필지수	면적(m ²)	주택수	비고
화순읍 도동리 1구	63	16,369	38	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문찬주)

-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3. 1. 17 건설부 고시 제17호로 결정 고시되어 본 군에도 1읍 2개면 41.7km²가

지정되었으나, '98. 12. 24 헌법 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취약 지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견 개진의 건

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10. 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9. 11. 23

다. 상 정 일 자 : '99. 11. 23

(제79회 임시회 제5차 산업·건설위원회 회의)

(제80회 임시회 제2-3차 산업·건설위원회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

나. 제안이유

- '89 ~ 97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한 화순 광덕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육시설(초등학교) 부족 현상이 심화 조기에 초등학교를 신설 수요에 긴급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위 치	용 도 지 역		면적(㎡)	시 설 명	비고
	당 초	변 경			
화순읍 일심리 646-1번지 일원	생산녹지	자연녹지	19,250	초등학교	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문 찬 주)

- 3차에 걸친 광덕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초등학교 시설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조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함이 화순읍 도시발전과 교육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 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 개선의 건

和順邑 都市計劃施設 (初等學校) 變更 決定 (案)

□ 目 的

'89 - '97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한 화순광덕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육시설(초등학교) 부족 현상이 심화, 조기에 초등학교를 신설 수요에 긴급 대처코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코자 함.

□ 現 況

- '99년도 8월 현재 화순읍 관내 초등학교 2개교의 학생수는 2,890명이며
- 향후 2003년도 총 학생수는 4,492명이 예상되어 1,602명을 수용할 46학급 1개교의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

□ 都市計劃 變更 內容

위 치	용 도 지 역		면적(㎡)	시 설 명	비고
	당 초	변 경			
화순읍 일심리 646-1번지 일원	생산녹지	자연녹지	19,250	초등학교	

□ 그동안 推進計劃

- '99. 6. 30 : 도시계획시설(초등학교) 변경 결정 입안 요청 - 화순교육장
- '99. 7. 22, 7. 23 :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광고
- '99. 8. 5 : 도시계획시설(초등학교) 변경 결정(안) 설명회
- '99. 8. 26 : 군의회 설명

□ 今後 推進計劃

- '99. 11 : 결정 및 고시
- 2000. 1 : 지적고시

□ 主務課 意見

- 도시계획법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추진코자 함.